

의안번호	제 645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월 일 (제 329회)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3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3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 통보 규정 신설(안 제7조)
 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세자에 대한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 통보
-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 신설 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9조로 하고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허가 등의 제한요구 통보) 영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통보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(허가 등의 제한요구 통보) 영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 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 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 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8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통보시에는 배 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)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채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(면허 분 등록면허세, 균등분 주민세, 소 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)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</p>	<p>제9조(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세기본법

제65조(관허사업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72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 그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49조(허가 등의 제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